

사천시 새마을장학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

제94회 사천시의회 임시회

제1차 총무위원회(2005. 3. 24)

1. 심사경과

가. 2005. 3. 3 : 사천시장제출

나. 2005. 3. 18 : 총무위원회 회부(의안번호 제7호)

다. 2005. 3. 24 : 제94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 상정
의결

2. 제안설명 요지(주민자치과장 강의태)

가. 제안이유

우등장학생의 자격기준 및 지급정지기준을 교육인적자원부의 학업 성적관리제도에 맞게 정비하고 특기장학생의 자격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,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 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내용

- 1) 우등장학생의 자격기준을 학업성적관리제도에 맞게 정비
 - 평균점수가 100분의 60 이상 → 성취도가 “미” 이상인 과목이 전체 과목수의 50퍼센트 이상
- 2) 특기 장학생의 자격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
 - 기능·체육·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 → 기능·체육·예능분야에 입학하였거나 시·군 단위 이상 대회에서 입상한 학생
- 3) 우등장학생의 자격정지 기준을 변경함
 - 평균점수가 100분의 60 이하 → 성취도가 “미” 이상인 과목이 전체 과목수의 20퍼센트 이하
- 4) 장학금의 지급시기를 조정함
 - 매 학기 개시 후 50일 이내 지급 → 40일 이내 지급
- 5) 법령 제명 띄어쓰기 등 정비

다. 관계법령

- 학교생활기록부전산처리및관리지침(교육인적자원부 훈령 제 616호)

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문필상)

일부개정조례(안)은 교육인적자원부의 학업성적 관리제도에 맞게 우등장학생의 자격기준 및 지급정지기준을 정비하고, 특기장학생의 자격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장학금의 지급시기를 매학기 개시후 50일 이내 지급에서 40일 이내 지급으로 조정함.

기타 법령제명 띄어쓰기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법적인 문제점 없고, 시행에도 특별한 문제 없을 것으로 사료됨.

4. 주요질의 및 답변요지

질의위원	질의요지	답변자	답변요지
이문상 위원	○사천시 새마을장학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조에 새마을지도자에 부녀새마을지도자, 문고새마을지도자는 포함되어 있으나 직장새마을지도자는 제외되었는데 포함이 가능한지	주민자치과 장 강 의 태	○도 준칙에 따라 개정하는 조례안이기에 때문에 도의 의견을 참고하여 차후 포함사항을 검토하겠습니다.

5. 토론 요지 : 없음

6. 심사 결과 : 원안 가결

7. 소수 의견 : 없음